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1일

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 납세자에게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(안 제16조의2)
 -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함

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1장당 150원
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1장당 300원

○ 감면제외대상 지방세법 인용조항 변경(안 제18조)

- 감면제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법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

○ 경상북도 세정과-2837('11.2.24) :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2010년 12월 27일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한 것으로
- 시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이사로 인한 고지서 미수취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세금납부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